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11월 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월 1일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0. 30. (금)	담당부서	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담당과장	박용민 과장(043-870-5450)	담 당 자	백희선 주무관(043-870-5460)

힘차게 뛰는 한국 경제

비비탄총 사고 방지를 위해, 불법 개조를 막는다

-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을 통해 비비탄총 안전관리 강화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장난감 비비탄총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**탄속제한장치**와 관련하여, **부착 기준을 신설**하는 내용으로 **2일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**한다.

* 탄속제한장치 :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(공기압, 가스압)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(발사 방해물)

< 탄속제한장치의 예 >



□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**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.2줄(J) 이하**(성인용 0.2J 이하, 청소년용 0.14J 이하)**로 관리**하고 있다.

○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한 **에어소프트 스포츠총**(발사에너지 0.5~1.5J, 주용도 서바이벌 스포츠)**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** 발사에너지를 0.2J 이하로 낮춘 뒤 **장난감총으로 인증**받아 판매하고 있다.

백희선 /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/ 2020-11-01 14:51:04

○ 그러나 **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,** 소비자들이 **탄속제한장치를 제거**하거나 **노즐을 통째로 교체**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.

□ **국가기술표준원**은 **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, 부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(안)을 마련**하여, **'21년 5월부터 시행**한다.

○ 신설된 안전요건에 따라 **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부착**해야 하며, **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**된다.

○ 또한, '누구든 **탄속제한장치를 제거·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**될 수 있다'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시하도록 하였다.

○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개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업계간담회, 서바이벌 동호회 의견수렴, 행정예고('20.3.30~5.31)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.

□ 한편, 사용자들이 수입 비비탄총의 **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개조하는 주목적은 서바이벌 스포츠 등 레저용으로 사용하려는 것**이어서,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부 부처간 협의해 왔다.

○ 이에 따라, **문화체육관광부는 서바이벌 스포츠 등을 관리하는 「육상레저스포츠법(가칭)」을 제정**할 계획이며, 이를 근거로 **경찰청은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발사에너지 0.2J 이상의 스포츠총의 제조·수입·사용을 허용**하기로 하였다.

* 「**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**(약칭 **총포화약법**)」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라 **겉모양이 총포와 유사하거나 발사에너지가 0.2J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총포**로 분류되어 **제조·판매·소지 금지**

○ 향후 **스포츠총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,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난감총의 불법 개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자체를 금지**하고 0.2J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제작된

제품만 장난감총으로 판매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“이번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서 **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와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기를 기대**한다”면서,

○ 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**안전기준의 강화 못지 않게 안전한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**”고 강조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백희선 주무관(☎ 043-870-546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비비탄총 관련 사고 유형 및 설문조사 결과

□ (사고유형) **최근 5년간('15.1월~'19.12월) 비비탄총 관련 사고를 분석한 결과**,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지만,

○ **비비탄총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각막 손상 등 병원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수준**이어서, **사용 장소 제한,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, 단속·처벌 규정 마련 등이 필요**한 것으로 분석

< 사용 중 발생한 사고 >

	발사로 인한 상해 (46건, 14%)		탄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 (279건, 86%)	
'15~'19년간 총 325건	눈 (각막 손상 등)	91%	탄환이 코에 들어감	56%
	얼굴 (치아 손상 등)	7%	탄환이 귀에 들어감	43%
	하체 (멍, 찰과상 등)	2%	기타(삼킴 등)	1%

* 출처 : 한국소비자원, 제품안전관리센터, 경찰청

○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비비탄총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나, **비비탄총의 '안전한 사용'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**에 있어, 그간 사용 전반에 대한 개선 민원이 국표원으로 다수 제기

□ (설문결과) **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동으로 대국민 설문**('20.9.16~9.25,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및 네이버앱, 총 2,618건)을 실시

○ 응답자 **대부분이 비비탄총 사용 장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**했으며, **서바이벌 게임장 등 스포츠 시설 확충과, 사용자 교육, 법규 미준수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**

< 설문 결과 >

찬반 투표 (2,618건)	질 문	찬성(%)	반대(%)
문항 1	미성년자의 비비탄총 사용장소 제한 필요	66.9	33.1
문항 2	미성년자의 비비탄총 사용 금지 필요	46.8	53.2
문항 3	서바이벌 스포츠총 사용·보관 장소 제한 필요	27.8	72.2
문항 4	놀이시설 마련 필요	85.6	14.4

의견 제출 (1,837건)	비비탄총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은?
주요 의견	·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실시 · 안전요원 배치 ·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사용 허용 · 사용 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· 서바이벌 게임장 등 사용 시설 확충
미성년자 사용 관련	· 비비탄총 구매·사용 시 보호자의 관리·감독 필요 · 학교 앞 문구사에서 판매 금지*
성인 사용 관련	· 성인용 에어소프츠건(스포츠용 비비탄총) 관리 주체 변경 필요 – 장난감이 아닌 스포츠 장비로 취급 · 에너지 기준을 해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규 위반 시 실총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
기타 의견	· 에너지를 조작 못하게 제작하도록 의무화 · 서바이벌 게임용 모의총기 소지 면허제 및 적성검사제 도입 · 서바이벌 게임 신고·허가제 도입 · 미성년자가 성인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온라인에서 판매 금지 · 비비탄총 구매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· 비비탄총 판매허가제 도입

* **연령에 맞지 않는 제품을 어린이에게 판매 시**「전기생활용품안전법」제51조제2항 제22호에 따라 **과태료 부과**(신고 : 한국제품안전관리원 T.1833-4010)

○ 국가기술표준원은 설문 결과를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전달하고, 비비탄총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, 시설·장비 관리, 법규 위반 시 처벌 등 **사용 전반에 관한 각 부처의 역할 검토를 요청**했음